

의안번호	2216446
의 퇴 인	복기왕의원
회 답 일	2026.2.20.
추 계 번호	26B0536

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업)	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함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8.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	의무규정
2	안 제15조 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대부 등의 특례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5조제7호 (사업)	• 미대상: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은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시행중인 사업으로,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 –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사업 내 내역사업 ‘해외연구사업 19.4억원(스마트유지관리시스템 구축, 기반시설 첨단 올림관리 기술 개발 등)
2	안 제5조제8호 (사업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5조 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 대부 등의 특례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(안 제5호제1항제8호)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에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동법 제8조¹⁾ 및 제9조²⁾에 따라 국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게 될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, 사업 대상과 사업규모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, 재정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15조)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·「물품관리법」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이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·대부 또는 매각이 시행될 경우 해당 기관의 세외수입 감소 및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자산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여 사용 중이며([참고자료]), 향후 개정안에 따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, 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감소 및 자산감소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그런데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용하거나 대부할 공유재산의 종류, 면적,

1) 제8조(자금의 조달 등)

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(出捐金) 또는 보조금
2. 정부 외의 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
3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
4.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5. 제12조에 따른 차입금(借入金)
6.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

2) 제9조(보조금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무상대부 방법, 기간, 사용허가 여부 및 매각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
향후 예상되는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
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
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국토안전관리원 국유재산 무상사용 현황

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

□ 무상사용 현황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번지>

연번	품 명	세부명칭	수량	단위	비 고
1	토지	청사 대지	99,173.9	m ²	한국건설기술연구 원 공동사용
2	건물	관리원숙소	294.6	m ²	
3	건물	시험소본관동	6,498.74	m ²	
4	건물	사무동	236.88	m ²	
5	건물	특수교통합유지관리센터	366.37	m ²	
6	건물	진단차량정비동	84	m ²	
7	건물	진단차량차고동	490	m ²	
8	건물	경비실	34.92	m ²	
9	건물	매점	24	m ²	
10	건물	대강당	765	m ²	한국건설기술연구 원 공동사용
11	건물	대강의실	226.8	m ²	한국건설기술연구 원 공동사용
12	건물	구내식당	655.92	m ²	한국건설기술연구 원 공동사용
13	건물	매점(내부)	27	m ²	한국건설기술연구 원 공동사용

자료: 국토안전관리원